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가단1219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2. 8. 9.

판 결 선 고 2022. 9. 6.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778,588원 및 그중 3,755,416원에 대하여 2021.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6. 12.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양수금 청구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 1) 피고 B은 1996. 2. 7.경 소외 D 주식회사에 E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사용한 금원에 대한 결제는 매월 25일하되, 연체 시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하였다.
- 2) 피고 B이 위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음에도 회수가 어렵게 되자, 위 D 주식회사는 2003. 3. 27. 주식회사 F 및 G 주식회사(이하 F은행 등 이라 한다)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후 F은행 등은 2003. 5. 15. H 유한회사에게, H 유한회사는 2007. 5. 7. 소외 I 유한회사에게, 위 I 유한회사는 2007. 5. 8. 다시 주식회사 F에게, 위 주식회사 F은 2011 4. 26. 소외 J 유한회사에게, 위 J 유한회사는 2019. 1. 25. 원고에게 위 B에 대한 채권을 각 전전양도하였다.
- 3) 피고 B은 2021. 1. 19. 현재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 대하여 카드사용원금 3,755,4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8,023,170원(= 인수 전 발생한 15,862,523원 + 인수 후 발생한 2,160,647원) 합계 21,778,588원이다.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양수금 21,778,588원 및 그중 3,755,416원에 대하여는 2021.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피상속인 K의 등기원인일자(사망일)인 2000. 11. 30.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12. 7.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6. 10.은 이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 속에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위 1. 가.의 1) 내지 3)과 같이 원고는 B에 대한 카드사용 원리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2021. 1. 19. 현재 위 채권 원금 3,755,416원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18,023,170원이다.

나) B의 어머니 망 K가 2000. 11. 30. 상속인으로 피고와 B, L, M, N, O을 두과 사망하였고, B은 2016. 12. 7.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6 지분에 관한 상속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 C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P 유한회사에게 35,502,000원(= 1,333,000원 + 19,519,000원 + 14,650,000원), 원고에게 앞서 본 3,755,416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피고 C은 B이 2001. 7.경까지 대구 서구 Q건물 R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1. 3.경까지 대구 서구 S에서 T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무자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의 무자력 여부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인 2016. 12. 7.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U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대법원 및 대구지방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사해행위 성립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B에 대하여 양수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원금 3,755,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는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 B이 자신의 소유한 부동산의 전부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6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채무자 B과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공동상속인들은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1억 원으로 정하고, 그 1/5에 해당하는 2,0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상속분에 상당한 정도의 금원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B의 딸인 V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채무자인 B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인 점, 특히 위 피고는 위 돈을 B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 딸의 명의로 지급하였고, 위 금원이 B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 B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

별지

부동산 목록

1. 경상북도 경산시 W 대 327㎡
2. 경상북도 경산시 W 지상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X
적벽둘조 스라브지붕 단층농가주택 120.5㎡, 끝.

